

# 상쾌하고 즐거운 PC방 만들기



보건복지부



## 금연구역 확대!

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,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,  
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 
비흡연자의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.

금연상담전화 1544-9030  
전국 보건소 무료 금연클리닉 운영

# 2013년 6월 8일부터 모든 PC방은 **금연구역**입니다



## PC방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의 의무

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(법 제9조제4항).

흡연 금지를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	
	금연 건물 <건물>
	금연 시설 <시설>
	금연 <그 밖의 경우>

※ PC방이 금연건물이나 금연시설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금연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.

## 흡연실 설치

흡연실 설치의 의무사항이 아니며, PC방 업주가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▶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,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
- ▶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- ▶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- ▶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, 그 경계를 표시 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합니다.
- ▶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입니다.

## 위반 시 법적인 제재

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	
1차 위반	과태료 170만 원 부과
2차 위반	과태료 330만 원 부과
3차 위반	과태료 500만 원 부과
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	
	과태료 10만 원 부과

## 12월 말까지 부여된 PC방 전면금연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엇인가요?

**A** 법은 시행되었지만,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·안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. 정부에서는 계도기간(2013년 12월 31일까지) 중 단속처벌보다는 안내와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며,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, 흡연실 설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

단,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 기존의 금연 / 흡연구역 구분 칸막이는 철거해야 하나요?

**A** 당초 업주가 설치한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기존의 흡연구역이 없어지고,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·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철거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부분입니다.

##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, 소방설비 필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
**A** 영업장 내에 이동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신고가 불필요하나, 영업장 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축하는 경우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어 '안전시설등 설치(완공)신고'를 해야 합니다.

※ 소방방재청에서는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해 2013년 5월초 일선 소방서에 「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」(13.4.29. 시행)을 시달하였고, 설치구조·방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